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15
----------	----

발의연월일 : 2026년 8월 28일

발 의 자 : 이강무 의원

찬 성 자 : 박지효 의원, 조용근 의원
박순례 의원, 전 정 의원
김서윤 의원, 위정희 의원
이혜숙 의원

1. 주 문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최근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추진 과정에서 야기된 논란을 비롯하여 인사 채용 및 조직 운영 관련 공단 내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회계 집행 과정에서의 일련의 문제점을 엄정히 조사하고, 법령 및 규정 위반 여부를 규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종합감사가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제출된 조치결과의 적정성 및 이행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적절한 관리·감독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공단 운영의 실질적인 개선과 올바른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활동기간: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

나. 구성인원: 13명 이내

다. 활동내용

-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인사 채용, 조직 운영 및 회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송파구청의 적절한 관리·감독권한 행사 여부 조사
-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이행 실태 점검 및 공단 운영의 올바른 운영 방향 제시

라. 구성방법: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4. 관련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나.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특별위원회)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 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 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 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1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의회는 예산안, 결산 및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